

# 감정평가서

건명	주식회사 에스비씨컨설팅 소유물건(2025타경8588)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감정평가서번호	YT2507-050경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을태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최 지 해

감정평가액	이억삼천이백만원정 (₩232,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에스비씨컨설팅 (2025타경858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30	2025.07.28 ~ 2025.07.30	2025.07.3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32,000,000
		이	하	여	백	
<b>합 계</b>					₩232,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 평가는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소재 '효신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2층에이호(150.66㎡) 단위상가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의 개요

자료: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재지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03-1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 16]				
건물명 동호수	- / 제2층에이호				
토지면적(㎡)	564		규모	지하1층 / 지상3층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대지권 면적(㎡)	사용승인일	1983.09.16
기호	층/호수				
1,2	2층/에이호	150.66	-	564 x 70.5/564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 1)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5년 7월 30일로 하였음.

#####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5년 7월 28일, 7월 30일에 실지조사 및 가격자료 수집 등을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4. 그 밖의 사항 등

- 1)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관련 공부 및 귀 제시목록 등에 의하였음.
- 2) 대상물건의 목록, 형상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요항표, 위치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3) 구분소유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일체 평가액을 산정한 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평가명세표 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4)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 5) 본건의 소유권·대지권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토지등기부전부증명서상 지분(주식회사 에스비씨컨설팅 564분의 70.5)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6) 본건의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 시 이해관계인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확인은 외부관찰 및 탐문, 유사 물건의 일반적인 마감 상태 등에 의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1. 기준가치

#####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Ⅲ. 감정평가방법 및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방법

##### 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3)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함.

다만,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이 곤란하여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며, 구분상가이기는 하나 수익자료의 징구, 수집 등이 어려운 점 등 수익환원법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등 타 방법 적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비교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2) 거래사례의 선정

#### (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사용 승인일	전유면적 (㎡)	거래(평가) 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기준시점)	비고
1	동구 효목동 53*	-	1/1*	1983. 10.27	66.75	300,000,000	4,494,382	2023. 10.13	거래
2	동구 효목동 50*	-	3/30*	1984. 05.24	98.9	180,000,000	1,820,020	2022. 06.20	거래 (전면부 기준2층)
3	동구 효목동 53*~*	유림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지하/ *	1978. 12.07	48.27	136,000,000	2,817,485	2025. 04.04	평가 (경매)
4	동구 효목동 50*	-	2/*	1984. 05.24	56.62	170,000,000	3,002,473	2021. 06.03	평가(담보) (전면부 기준1층)
5	동구 효목동 50*	-	2/*	1984. 05.24	47.06	140,000,000	2,974,926	2021. 06.03	평가(담보) (전면부 기준1층)

#### (2) 비교사례 선정

인근지역 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되어 거래가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호 #2를 본건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선정함.

###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개별적 동기,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가격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거래사례는 인근지역 내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의 가격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검토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는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4)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간의 시간적인 괴리로 인한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교사례를 기준시점 현재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지역별 임대가격지수인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함.

- 임대가격지수 (대구광역시 집합상가) -

자료: 감정평가협회,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사례 기호	시점수정(2022.06.20.~2025.07.30.)
사례 2	지역 : 대구 (22.06.20~25.07.30)  2022년 02분기 : 0.81 2022년 03분기 : 0.6 2022년 04분기 : 0.13 2023년 01분기 : -0.47 2023년 02분기 : -0.67 2023년 03분기 : -0.28 2023년 04분기 : -0.02 2024년 01분기 : 0.41 2024년 02분기 : 0.34 2024년 03분기 : 0.27 2024년 04분기 : -0.06 2025년 01분기 : -0.38 2025년 02분기 이후 : -0.38 (2025년 01분기 자료)  $(1+0.0081*11/91)*(1+0.006)*(1+0.0013)*(1-0.0047)*(1-0.0067)*(1-0.0028)*(1-0.0002)*(1+0.0041)*(1+0.0034)*(1+0.0027)*(1-0.0006)*(1-0.0038)*(1-0.0038*121/90) \approx 0.99449$
시점수정치의 결정	<b>0.99449</b>

### 5)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사례와 지리적으로 인근에 소재하고 가치형성에 있어 상호 대체 및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6) 가치형성요인비교

구분 (상업용)		격 차 율		비 고
조 건	세 부 항 목	사 례	대 상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대상은 사례 대비 유사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0	대상은 사례 대비 유사함.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마감상태 및 각종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0.85	대상은 사례 대비 전유면적 크기 및 선호도, 노후도 등에서 열세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체로 대등함
누 계		1.000	0.8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례 단가 (단위: 원/m <sup>2</sup> )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가치형성 요인	면적 (m <sup>2</sup> )	산출가액 (단위 : 원)	감정평가액 (단위: 원)
1,2	1,820,020	1.00	0.99449	1.00	0.850	150.66	231,789,346	232,000,000

### 3. 참고가격

#### 1) 유사물건의 가격수준

구분	가격수준	비고
본건 유사 단위상가	2~3층 1,400,000원/m <sup>2</sup> ~ 1,600,000원/m <sup>2</sup> 내외 수준	(집합상가)
<b>의 견</b>		
본건 단지내 및 인근지역 유사물건의 가격수준(전유면적(m <sup>2</sup> ) 기준 단가)은 상기와 같이 조사되었으며, 건축년도, 층별·위치별 효용성, 건물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 경매 통계분석

자료 : 인포케어, 2025.06.30

구분	용도	대구광역시 동구		
		낙찰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건수
최근 1년간 평균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상가)	70.3%	27.8%	5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근린시설)	49.2%	23.1%	3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겸용)	52.0%	11.8%	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

### IV.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본건	232,000,000	구분상가

#### 2. 결정에 관한 의견

당해지역 집합상가의 가격 변동 추이,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방매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 16	503-1 위지상	주택,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 3층건			232,000,000	비준가액	
					1층	301.32			
					2층	301.32			
					3층	301.32			
					지하	301.32			
2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03-1	제2종근린 생활시설	위중 2층에이호	150.66	150.66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70.5	70.5		주식회사 에스비씨 컨설팅 지분 전부	
					564x---- 564				
<b>합 계</b>							<b>₩232,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소재 "효신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2층에이호 단위상가로서, 부근 일대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고 간선도로와의 위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 중 제2층 제에이호 단위상가로서,

<사용승인일자 : 1983.09.16>

- 외벽 : 타일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바닥 : 내장바닥재, 타일 등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공동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서측 전면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왕복6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2025-04-21)(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음.

# 광역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03-1 제2층에이호
-----	---------------------------



# 위 치 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03-1 제2층에이호



# 호 별 배 치 도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503-1 제2층에이호

NO SCALE



본 건  
제2층 제에이호





( 1 )



( )